

의안
번호

457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·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·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4. 16.

전문위원 강 영 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경이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457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3. 28.

라. 회부일자 : 2025. 4. 10.

2. 제안이유

-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·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의 고립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(안 제7조 및 제8조)
- 마.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4. 3. ~ 2025. 4. 8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조례안은 성북구 고립·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·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예방하는 등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2023. 4.18 개정 및 시행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¹⁾에서는 고립·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생활비, 건강검진 및 치료비,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
- 2025. 3.25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「2024 고립·은둔 청소년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전체 응답자 중 28.6%가 고립·은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들 중 72.3%는 18세 이하의 청소년기부터 고립·은둔 상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어, 고립·은둔 문제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음
- 또한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한 고립·은둔 청소년이 71.7%에 달해 회복 의지를 지닌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

1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(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)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(이하 “특별지원대상청소년”이라 한다)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15. 12. 30., 2019. 3. 19., 2021. 9. 24., 2023. 4. 18.>

1.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3.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4. 사회적·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

《 2024년 고립·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개요 》

- 연구기간 : '24.1월~10월 / * 온라인 웹조사 6.11~8.31
- 주관기관 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- 조사대상 : 전국 9~24세 청소년 19,160명
- 방식내용 : 온라인 링크(URL, QR 코드)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
- 조사결과
 - 고립·은둔 청소년 비율 : 전체의 28.6% (은둔상태 12.6%, 고립상태 16.0%)
 - 초고위험군 '방에서도 안 나온다'고 응답한 청소년 2.1%
 - 고립·은둔 시작 시기 : 18세이하 72.3%
9세미만(5.0%), 9~12세 12.0%, 13~15세 25.6%, 16~18세이하 29.7%, 19~24세 27.7%
 - 주요원인 : 친구등 대인관계어려움(65.5%), 공부 학업관련 어려움(48.1%),
가족관계 어려움(34.3%), 따돌림등 폭력경험 (24.7%)
 - 삶의 만족도(10점만점기준) : 고립·은둔 청소년 4.76점, 일반 청소년 7.35점
 - 재고립·은둔 경험 : 39.7% (처음인 경우 60.3%)
 - 자살 생각 경험 : 고립·은둔 청소년의 62.5%가 '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음'
 - 회복 의지 : 고립·은둔 청소년의 71.7%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응답
 - 필요한 도움 : 눈치보지않고 들러서 머물수 있는 공간 79.5%, 경제적 지원 77.7%,
혼자하는 취미·문화·체육활동지원 77.7%, 진로활동지원 75.1%

<출처> 2025.3.25.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포 보도자료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(목적), 안 제2조(정의)

-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·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,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여 “청소년”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“고립·은둔 청소년”, “사회적 연결”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

나.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- 구청장은 고립·은둔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함.

다. 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, 안 제6조(실태조사)

- 고립·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였고, 고립·은둔 청소년의 현황을 실태조사하여 지원 시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라. 안 제7조(지원대상), 안 제8조(지원사업)

-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·은둔 청소년으로 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방 및 발굴,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, 사회적 연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둠

마. 안 제9조(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)

- 대상자를 발굴하여 조기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단체, 학교,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

□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 개정에 따라, 고립·은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
- 우리 구의 고립·은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,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